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1. 도입 목적

-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채널거래 질서 정착 유도

2. 근거 법령

□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

법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 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2조 및 제17조

법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①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계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7조(금지행위)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3. 적용 대상

- 「방송법」의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자간 채널계약행위에 적용
- 이하 「방송법」의 유료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유료방송사업자**로, 「방송법」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PP(Program Provider)**라 통칭함
- *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
- 동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는 채널계약 행위에는 ▲채널제공 계약의 해지, ▲채널번호 변경 및 ▲상위 티어 상품 등으로의 이동 행위 등이 포함

4. 가이드라인 내용

① 채널계약 관련 평가기준의 공개

- 유료방송사업자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채널제공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전년도 상반기 까지 다음년도 채널구성 관련 평가기준을 PP에게 공개해야 함**
- 이 때 평가위원회 운영 등 기준 별 실제 **평가이행 방안 및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계획을 함께 통보함**
- 방송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미 공개된 평가기준에 대한 보완 및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추후에 다시 보완 및 변경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이는 RFP(Request for Proposals) 양식 발송 이전에 1회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 유료방송사업자는 평가기준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대상 PP에게 평가 계획 등을 반영한 RFP(Request for Proposals) 양식을 발송함
- 평가기준 마련 시 2009년 「케이블TV 채널 편성을 위한 PP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유료방송사업자별 특화 지표가 포함될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부 평가항목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
-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은 2009년 「케이블TV 채널 편성을 위한 PP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유료방송사업자별 특화지표 적용 시에는 전체의 20% 이내로 그 비율을 한정함
- 재계약 대상인 기존 PP와 신규 진입 PP의 평가요소 및 평가요소별 반영비율 등을 각각 달리하여 마련하고 공개할 수 있음
- 평가기준 공개방법은 유료방송사업자별 홈페이지 및 유관 협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되, 추후 평가기준 공개 등을 위한 별도의 종합 전산시스템 등이 구축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음

2) 채널계약 관련 평가결과의 통보

- 유료방송사업자는 평가요소별 특성을 고려하여 월, 분기, 반기, 연간 등 적정기간을 두어 평가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 이 때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이행은 평가기준 공개 시 포함되었던 계획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평가결과 통보는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하되, 반기 및 연간 단위로 평가를 하는 지표의 경우 반기 및 연간 단위로 실시
 -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10. 1. ~ 다음연도 9.30.까지함

- 유료방송사업자는 매년 4월에 전년 10월 ~ 다음연도 3월까지 월평가, 전년도 4/4 및 당해연도 1/4분기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10월에 4월 ~ 9월까지 월평가, 2/4 및 3/4분기평가, 연평가 결과를 통보함

< 평가결과 통보 계획 예시 >

평가요소	월평가	분기평가	반기평가	연간평가	통보계획
시청률	○				반기
본방비율	○				반기
HD송출		○			반기
자체 제작		○			반기
채널운영 충실도	○				연간
시청자 만족도				○	연간

- 평가결과 통보에는 대상 PP가 향후 프로그램 공급계약 등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평가등급 및 장르별 순위,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 포함됨

- 이 때 장르는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간 협의를 통해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채널구성 평가계획 공개 시 각 채널별 소속 장르를 함께 통보함
- 평가등급은 A부터 E까지 5단계로 분류하며, 단계별 비율 등을 정하여 채널구성 평가계획에 반영함
- 채널평가 결과는 차기년도 계약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분기별 연속하여 E 이하를 받거나 장르 내에서 하위 10%*에 속하는 그룹은 재계약 보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장르에 소속하는 채널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 후 최하위 채널을 재계약 보류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평가결과 통보 계획 예시 >

채널명	장르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점수	평가등급	장르별 순위	종합 결과
○○채널	오락	시청률				D
		본방 비율	20.1	D	8/10	
		HD 송출				
		자체 제작				

※ 시청률은 평가점수 외에 별도로 시청률을 기재토록 함

- 평가결과는 공식 문서(서면)를 통해 개별 통보하며, 향후 평가기준 공개 등을 위한 별도의 종합 전산시스템 등이 마련되어 이를 활용할 경우 온라인 통보로 대체할 수 있음

③ 채널계약 종료 등에 대한 통보 및 관련 소명기회 부여

- 유료방송사업자는 매년 7월말까지 재계약 불가, 채널번호 변경, 상위 티어로의 전환 사실 등에 대한 잠정 결과를 예고하고 PP가 관련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명을 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이 때 유료방송사업자는 대상 PP들이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주일 이상의 공식 소명절차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안내를 잠정 결과 예고 시 함께 이행함
- 유료방송사업자는 소명기회를 거쳐 채널 제공계약 관련 최종 조정이 완료되면 매년 10월 말일 이전에 재계약 불가, 채널번호 변경, 상위 티어로의 전환 사실 등 최종결과를 대상 PP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때 통보는 공식 문서형태의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

- 유료방송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이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라도 통보 및 소명기회 제공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
- 계약만료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하며, PP의 권익보호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료방송사업자는 채널계약(프로그램 사용료 포함)은 계약만료일 이전에 마치도록 함(권고사항)

5. 가이드라인 시행일 및 효력 등

- 동 가이드라인은 2018년부터 적용되며 유료방송사업자와 PP는 2019년 채널공급 계약서에 동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
- 동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시장 내 합리적인 채널제공 계약 절차 정립을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상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제공 거부·중단·제한 또는 채널편성의 변경행위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부당한 계약체결 금지행위 조사 우선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 실시
- (재검토 기한)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